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 2003년 3월 31일

개정 : 2011년 3월 14일

1.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4. 권한

4.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5. 의장

5.1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5.2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종류

6.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6.2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7. 회의 소집권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의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결의방법

9.1 이사회 결의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9.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

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9.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0. 부의사항

10.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1.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0.1.2 경영, 재무, 이사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 및 기타 주요 결정 사항

10.1.2.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10.1.2.2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10.1.2.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1.2.4 자산총액 10% 이상의 투자,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관한 사항

10.1.2.5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10.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2.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10.2.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10.2.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 내 위원회

11.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1.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1.3.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1.3.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3.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3.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1.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11.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1.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2. 의사록

12.1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12.2 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3. 간사

이사회는 간사는 기획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